남의 집 고양이와 싸움을 붙여 죽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퇴역군견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./사진=뉴스1퇴역군견이 남이 키우는 반려묘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70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.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,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퇴역 군견(말리노이즈) 견주인 A씨는 지난 10월6일 오전5시48분쯤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남의 집이 키우는 반려묘와 싸움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.그는 군견이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했다. 결국 고양이는 죽었다.A씨는 해당 고양이를 죽게 한 학대 행위와 B씨 소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동물보호법 제 10조(동물 학대 등의 금지) 2항에 따르면,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.신동일 판사는 "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말했다.하지만 "B씨와 합의한 점,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며 벌금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.